

한국 설계경기의 문제점

The problem of design competitions

박 영 건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

1958년 국회의사당 현상공모 이래 근 30년동안 지대한 관심속에 무수한 화제를 불러 일으켰으며, 특히 88서울올림픽이 결정된 이후 더욱 빈번하여지고 대형화된 현상설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뜻 있는 이들이 지면을 통해서나 사석 또는 공개석상에서 나름대로의 주장을 꾸준히 펴왔고 현실적으로 현저히 개선된 우리의 현상설계 풍토속에서 자칫 진부해 질 수 있는 문제점을 거론함이 새삼스럽다는 감도 없지않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극히 소수의 건축인들의 계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대부분의 건축사들에게는 「남의 일」인양 생각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현상설계의 의의는 여러각도의 시점에서 파악될수 있겠으나 동일한 과제를 대상으로 다수인이 동시에 경쟁적으로 작품을 수행함으로서 결과에 무관하게 서로의 주장을 비교평가 해 보거나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면에서 더욱 많은 건축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함으로써 우리의 건축

문화의 수준을 평준적으로 제고시키는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중요한 현상설계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도 대단한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된다.

그러나 일단 참여한 현상설계에 당선되어 자신의 작품을 소신껏 완성시킬 수 있다면 더욱 값진 일 일것이다.

근자에 있어서와 같이 현상설계공고가 신문지상을 범람한다면, 혹시, 「현상설계의 A, B, C.」또는 「현상설계 당선의 지름길」등의 제목을 갖는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등장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아닐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현상설계」라는 용어가 흔히 통용되고 있으나, 그 속성에 비추어 보거나 참여자의 입장에서 볼때 「설계경기」로 표현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어떤 표수나 각별한 전략을 통해 당선을 꾀하기 보다는 자신의 작품을 공정히 평가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다수의 참여자가 의욕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여건이 조성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좀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때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상설계 풍토의 문제점들을 파악함으로서 정상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으로 공용되고 있는 국제건축가연맹의 설계경기 규준을 모체로 건축관계 3단체가 함께 마련한 「한국건축설계규준」이 있으며 이를 운용하기 위한 위원회가 염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올바르게 지켜지지 않았을때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여타의 물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하며, 다만, 간곡히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에 머무르고 있다.

현상설계의 주체는 주최자, 참가자 및 심사위원으로 대별되어 파악되는데, 이러한 세개의 집단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는가 하는 것이 실질적인 성패의 관건이라하겠다.

현상설계가 이루어지는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서 문제점들을 거론키로 하면, 현상설계는 주최자인 발주자가 경쟁입찰을 금하고 있는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이외의 방식을 통하여 설계자 및 작품을 선정하고자 할때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작품을 선택하느냐 작가를 선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본국의 어느 도시에 세워지는 미술관의 경우 등을 보더라도 굳이 작품선정에만 치중하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는 주최측의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입장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상설계를 시행함에 있어 주최자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설계경기규준 제4조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및 설계지침을 확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제반 조건들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이 단계에서부터 심사위원이 선정되어 현상설계의 목표설정 및 경기조건의 결정에 참여케 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

직하다고 하겠다.

수년전만 하더라도, 담당자의 경험이나 사전 지식의 습득이 불충분한 까닭이 었겠지만, 대지조건을 밟히지 않는 현상 설계공모가 있어 문제가 되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로 몇 차례의 국제현상설계공모를 거치는 동안 이에 대한 인식이나 구체적인 준비물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현상설계의 당선작품이 가급적 원안의 취지에 충실하게 발전되어 실시설계가 이루어 지도록 하자는 목표를 설정한다면 특히 설계지침서의 내용이 갖는 중요성은 깊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상설계를 공모하여 건축설계를 수행하는 경우에 어쩔 수 없는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인, 계획설계 단계에서 건축주 또는 사용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시행이 원활치 못한 점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현상설계공모를 통하여 지어진 많은 건물 가운데 원래의 당선작과는 판이하게 완공된 경우가 더욱 많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터이다.

현상설계를 「설계경기」라고 표현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에 동감을 표한다면 경기를 진행함에 있어 모든 참가자들이 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승복할 수 있는 규칙을 바탕으로 힘이 더욱 마땅하다. 현대 스포츠에 있어서도 경기 규칙의 완벽성이 경기 내용의 질적향상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왔다는 사실과 상통한다고 보여진다. 누가보아도 특정 인에게만 유리한 규칙을 세워놓고 경기를 치룬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한 것이 아닌가? 현상설계가 진정한 케도를 이탈하여 「설계권」 자체가 「이권」이라는 차원에서 악용된다면 주최자나 참가자를 막론하고 모든 관련자들이 일종의 「문화적 범죄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겠다.

설계지침서상에 설계경기규준 제6조에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현상설계」라는 용어가 흔히 통용되고 있으나, 그 속성에 비추어 보거나 참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설계경기」로 표현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떤 묘수나 각별한 전략을 통해 당선을 꾀하기보다는 자신의 작품을公正히 평가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다수의 참여자가 의욕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여건이 조성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명기된 바와 같이 필요한 모든 사항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히 상금 및 경비에 관한 사항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최자측이 더 나은 결과물을 얻기 위한 확고한 취지에 따라 현상설계를 시행코져 한다면, 사전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입수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아울러 사업의 초기투자비용에 해당되는 현상설계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도 적절히 확보하여야 한다.

만일에 수의계약이 아닌 현상설계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비의 절감만을 도모한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함이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현상설계의 시행에 소요되는 제경비들을 일반적인 보수요율에 의한 계획설계비에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주최자의 문화의식 수준이나 본래의 시행의도 자체가 의심받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다. 특히 자유건축가가 아닌 건축사의 입장에서는 경비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형편인 것이다. 아울러 순수한 입장에서 현상설계에 참여하여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면서 대단한 정열을 갖고 작품의 제작에 임하게 되는 많은 참가자들에게는 최소한의 보상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참가자들이 사명감을 갖는다면 우리의 건축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이는 너무도 현실을 도외시하는 처사가 아닐런지?

한편, 현상설계에 있어 실제로 작업을 위하여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설계기간이 적절치 못하여 그 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경기」라는 면에서 보아서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라면 단기간 일지라도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한다면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겠고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토대로 작품제작에 임할 수도 있겠으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하는 당면 과제를 소화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극단적인 예로서,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여 작업을 진행시킨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리하게 짧은 기간을 제시한다면 이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막연히 충분한 기간을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는데, 아무리 필요한 경비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한 사람 또는 하나의 설계팀만이 최종 당선자로 선정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자칫하면 국가적인 자원의 낭비를 초래

할 수도 있겠고 과연 경쟁을 야기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명구가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수의계약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설계일정을 감안하여 과업의 범위에 따라 약간 여유 있게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가자의 입장에서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문제점 가운데는 주최자가 요구하는 성과품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편리하다거나 소요경비의 제한 등을 위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정해지는데, 올림픽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시행된 현상설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나친 제약을 가지지 않았느냐 하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다. 제출도서의 재질과 규격 및 도면매수는 물론이고 표현할 내용과 「레이아웃」까지도 지나치게 획일화 하였다는 평을 듣고 있다. 주최측에서 볼 때 특히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잡음이 생겨 날 소지를 사전에 없앤다는 의도가 있겠으나 재고하여 볼 문제

인 것으로 생각된다. 도면의 표현기법에 관한 문제만 보더라도 대체로 채색을 금지하고 있으며 백색 바탕에 흑색선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켄트지 위에 먹물로 「잉킹」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기에는 인력의 소모가 많고 구식이 되어버린 느낌이 앞선다. 최근에 사용빈도가 부쩍 높아진 사진재판술을 이용하는 방법등은 무리한 비용 부담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중요한 현상설계가 중복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수입에 의존하는 인화지가 시중에서 동이 나거나 몇몇의 인쇄소에 작업 의뢰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모인쇄소 사장은 「내가 최초의 심사위원이다」라고 공언하게 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작품 내용에 있어 충실을 기하기에 앞서 표현수단의 개발이나 물량공세에 집착하게 되는 이유는 경기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좋은 내용의 작품을 만드는데 주력하여야 겠지만, 작품에 담긴 내용이나 의도가 「심사」라는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충실히 전달될 수 있는가를

우려하는 강박관념이 작용하고 있음을 본다. 이는,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한 자신의 작품을 제한된 규정안에서 최대한 돋보이게 치장하므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져하는 참가자들의 지나치게 조장된 경쟁심리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과다 비용지출을 억제하는 기본방침에 충실하면서도 참신한 「아이디어」개발을 자연스럽게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과업의 규모와 참여 가능한 범위에 따라 정해질 문제이나, 단계적으로 나누어 시행하는 방식도 적절히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작업시간의 단절과 장기화 함에 따른 문제점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현상설계의 당선작 발표가 있을때면 으레 개운치 않은 뒷소문과 함께 오랫동안 논란이 되는 것으로 심사위원의 구성과 심사방법에 관한 문제들이 있다. 과연 어떤이들이 심사위원으로 적당하며 몇명을 선정하여야 하는가? 그 명단은 어느 단계에서 공개 되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그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람의 일은 결국 사람에 의해 정해진다」는 단순논리 뿐 아니라 시행되는 현상설계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설계경기규준 제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축가들이 주체가 되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 건축인들이 많으며 다만 소수의 비전문가들만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은 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모든 설계경기규준 가운데 가장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건축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나 신뢰도가 못미치는 형편에서는 사업을 시행하여 소유권을 갖게 되는 개인이나 단체가 사유재산인 동시에 우리사회의 총체적 자산의 일부인 점을 다시금 인식하도록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수용하는 지도계층의 의식 수준이

“현상설계의 당선작 발표가 있을때면 으레 개운치 않은 뒷소문과 함께 오랫동안 논란이 되는 것으로 심사위원의 구성과 심사방법에 관한 문제들이 있다. 과연 어떤이들이 심사위원으로 적당하며 몇명을 선정하여야 하는가? 그 명단은 어느 단계에서 공개 되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그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람의 일은 결국 사람에 의해 정해진다」는 단순논리 뿐 아니라 시행되는 현상설계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향상되지 않는 이상, 실효없는 주장만 되풀이 될 뿐이다. 다수의 비전문가에 의해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갖는 건축전문가들에게 상당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판단이 될 것이다. 주최측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며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표방하여 심사위원회의 전체의사가 올바르게 형성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심사위원의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는 문제와 공개하는 시기에 관한 견해는 각 주체집단의 입장이나 이익에 관련하여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필자의 견해로도 전술한 바와 같이 가급적 초기 단계에 심사위원이 선정됨은 물론, 현상설계공모시에 함께 발표 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기왕에 있었던 대부분의 건축인들이 주장했던 바와 일치하는데, 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상당히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당연한 논리이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로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든 현상설계 참가자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여야 하며 모든 심사과정을 통하여 작품제출자의 익명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점이 있다. 점차적으로 개선될 문제이나, 현재의 형편으로는 현상설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많은 이들이 현상설계가 갖는 여러가지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본질적으로 회의를 갖는 부분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적절한 방법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심사의 방법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도 있다. 당연히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당선작품이 선정될 것이지만, 전문분야에 대한 안목이나 지식의 수준에 따라 작품을 이해하는 정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숫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비전문가들을 위하여 심사초기에 제출된 작품을 놓고 전문가들이 해설을 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

“현상설계공모에서 당선작을 정하지 않거나 당초의 규정을 무시한 채 가작 및 당선작의 수를 임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다. 대부분 그대로 시행하기에 마땅한 작품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합리화 시키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차라리 시행절차상의 제반 문제점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주최측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

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채점기준표를 작성하여 작품의 우열을 판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상설계공모 과정을 통하여 기념비적인 작품이 빛을 보게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지만 간결한 기대를 외면한채 보편적이라 할 수 있는 무난한 작품이 선정되는 경우가 더욱 허다함은 불행한 현실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기왕에 시간과 인력을 소비하면서 많은 경비를 들여 시행하여 얻어진 작품이 좀더 높은 수준이어야하며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가? 가장 공신력이 있어야 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에 시행한 현상설계공모에서 당선작을 정하지 않거나 당초의 규정을 무시한 채 가작 및 당선작의 수를 임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다. 대부분 그대로 시행하기에 마땅한 작품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합리화 시키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차라리 시행절차상의 제반 문제점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주최측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

일단 당선작이 결정되어 발표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심사과정의 전말을 밝혀야 하며 당선작에 대한 각 심사위원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신춘문예발표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는 협된 소문이나 의문의 소지를 없앨수 있는 가장 적절한 특효약이 될수있을 것이다.

최근에 시행된 현상설계에 있어 참가조건으로 제시된 사항중에는 자격을 갖춘 건축사 또는 그 사무실이거나 협력자이 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당선작이 작품자체로 그치기 보다는 실제로 지어질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한동안 떠들썩 했던 작가의 자격 논쟁이 대두될수도 있겠으나 건축사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면에서 적극 수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직업인으로서 건축사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한편, 작가의 동반자이거나 조력자이기 보다는 건축사 자신이 작가임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 가운데는 당선되는 경우에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자격이 없거나 공공연히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과 협작을 꾀하는 경우가 있다. 힘은 건축사의 명예를 걸고 적극 지양되어야 한다.

아울러, 건축관계 3 단계중에서 특히 법적인 보장을 받아 설립된 건축사협회는 보다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전체회원의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것이다.